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2024. 02. 26.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295호로 2024년 2월 8일 김지연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심리상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나. 지원대상(안 제4조)
- 다. 상담사 자격기준(안 제6조)
- 라. 상담사 업무(안 제7조)
- 마. 정신건강통계(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2. 8.~ 2. 14.)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운영하고있는 힐링캠프 심리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사회적응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심리상담실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지원내용)에서는 심리상담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상담사 자격기준)와 제7조(상담사 업무)는 심리상담실에서 근무하는 심리상담사에 대한 자격기준과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상담사 자격 기준¹⁾은 “힐링캠프 상담실” 채용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을 나열한 것임.

1) 상담사 자격기준

자격증	구분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자격증	등록민간자격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	등록민간자격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가 자격증	등록민간자격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국가전문자격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국가전문자격

- 안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와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에는 효과적인 심리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13조(정신건강통계)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심리상담실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²⁾,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작한 “힐링캠프 상담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보임.
- 영등포구는 구(區) 특화사업으로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구민들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방문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새 희망 힐링캠프 프로젝트³⁾”의 일환으로 “힐링캠프 상담실⁴⁾”을 개소하였으며, 지난 4년 동안⁵⁾ 연평균 2,362건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우리구는 2015년 지역기반 자살예방사업으로 “새 희망 힐링캠프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현대사회의 각종 사회병리적 현상인 우울, 자살, 성폭력, 학교폭력 등 적극 대처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한 바 있음. ▲ 자살 고위험자 조기발견 및 관리 ▲ 자살유가족 관리 ▲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인식개선사업 ▲ 힐링캠프 상담실 운영 등을 실시함.

4) 처음 사업 진행 당시 정신건강복지센터(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다는 우려는 받은 바 있으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표적대상은 중증정신질환자로 힐링캠프 상담실의 대상자와는 다른 데 사업 목적이 있음을 밝힌 바 있음. (제172회 행정위원회 업무보고의 건 중_2012.11.22.)

- 현재 “힐링캠프 상담실”은 임상심리전문가 1명, 상담심리사 2명⁶⁾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상담 인력 채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체계적인 상담실 운영을 도모하고, 향후 정신건강통계를 참고하여 관련 보건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촘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진행의 적절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5) 힐링캠프상담실 추진실적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	2,360	1,831	2,879	2,381

- 6) 임상심리전문가 1명(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라급), 상담심리사 2명(기간제근로자)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채용하고 있음.

참 고 자 료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각각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관할 시·도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2024. 02. 26.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296호로 2024년 2월 8일 김지연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해당 조례 제정 당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대상이 50대 주민 한정이었으나, 의회 상임위원회 조례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을 50대 주민 우선으로 수정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전 연령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음. 이에 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음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조례 전체
 - 1) “정신건강검진”을 “마음건강검진”으로 변경
- 다. 지원 대상(안 제5조)

정신건강검진대상 “50대”를 “19세 이상”으로 변경
다.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를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안 제8조)
마.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2024. 2. 8.~ 2. 14.)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 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동조례의 상위 법률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과 조례 전체에서 “정신건강검진”을 “마음건강검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 안 제5조(지원대상)에서 정신건강검진 대상의 나이를 현재 사업 추진 내용에 맞게 19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 안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는 상위법률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53조

및 제54조에서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에서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등 비밀 유지에 관한 의무를 규정함.

○ 검토 결과

- '15년 서울시¹⁾에서 50대 베이비부머 세대²⁾를 대상으로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울시 17개 자치구³⁾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우리구(區)에서는 2016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16.7.1.)를 제정한 바 있음.
- 지원대상을 “50대 베이비부머 세대”로 특정한 것은 사업 시행 당시 정부에서 40세와 66세는 두 차례 생애전환기 정신건강검진을 하고 있었지만, 은퇴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전환기를 맞아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50대는 제외되고 있는 세대를 반영한 이유로 사료됨.

1)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2014) 발표

2) 1955~1963년생

3)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중랑구, 영등포구

「마음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동대문구, 용산구, 강남구, 종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구로구

- 한편, 본 조례 제정 당시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었으나 위원회 회의 중⁴⁾ 연령대를 명시한 조례명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모아져 제명에서 “50대”가 삭제되고, 제5조의 지원대상은 “50대 주민 중”에서 “50대 주민을 우선으로하되”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된 바 있음.
- 따라서, 구(區)에서는 사업 시행 초기부터 50대 주민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추후 서울시에서도 관련 사업의 대상 확대를 요청함⁵⁾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정신건강검진대상을 19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정신건강’ 대신 ‘마음건강’으로 순화된 용어를 사용⁶⁾함으로써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며,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짐.

4) 제195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중(2016.6.21.)

5) 「50대 마음 건강검진 및 상담사업 자치구 조례 정비를 통한 사업 확대 요청」(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2018.4.30.) 공문을 통해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대상 확대를 요청한 바 있음

6)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023.12.5.)보도자료를 통해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정신건강’ 대신 ‘마음건강’이란 표현으로 대체하여 정신적 영역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인식을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힘.

참 고 자 료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두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둔다.